



금융위, 공매도 금지 조치 일부 해제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 간 취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를 11월 10일부터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함.

- 금융위는 2011년 8월 미국 및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주식시장 급락과 공매도¹⁾가 시장불안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이자, 8월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²⁾를 시행함.
 - 2011년 8월 그리스·이탈리아·프랑스·스페인·벨기에가 공매도를 금지하였으며, 특히 그리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4개국은 일부 금융주에 국한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함.
- 금융위는 최근 세계 금융·경제 여건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2011년 8월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, 그리스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 - KOSPI는 2011년 8월 1일 2,172,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인 8월 9일 1,801, 최저점인 9월 26일 1,653, 11월 7일 기준 1,919로 변동됨.
- 따라서 금융위는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해제하되, 금융주에 대한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,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로 ‘한국형 헤지펀드’ 출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.

- 일부 전문가들은 금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 급락 시 시간을 벌어주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, 추가적인 급락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함.
- 한편,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중요한 투자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지 조치 해제로 12월 도입 예정인 ‘한국형 헤지펀드’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되고 있음.

(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등, 금융위 등, 11/8)

1)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을 의미함.

2) 현행 「자본시장법 및 시행령」에 따르면,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음.